

전기통신기본법중 개정법률(안)

정보통신부공고 제1996-82호

1. 개정취지

통신사업의 본격적인 경쟁체제 구축에 대처하여 통신위원회를 분쟁해결 및 공정경쟁확보를 위한 전문규제기관으로 개편하고, 전기통신연구개발 및 인력양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부설기관을 설치하며, 정보화시대의 핵심기반구조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WTO 체제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통신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일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을 설치하고, 연구소에 산하연구기관과 부설 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나. 정보화시대의 핵심기반구조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공동구축, 산업단지·도로 등

에 설치되는 공동구·관로 등의 활용, 재난시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다. 통신사업의 본격적인 경쟁체제 구축에 대처하여 통신위원회를 분쟁해결 및 공정경쟁확보를 위한 전문규제기관으로 재편하고 상임위원 및 사무국을 신설하도록 함.
- 라. 전기통신설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제도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제도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관리규정을 신고제에서 사후점검제로 완화함.
- 마. WHO체제에 대비하여 외국과의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상호인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작품 채택의무 및 전기통신기자재 수급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전기통신설비 기중선정제도를 폐지함.
- 바. 전기통신기자재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표준인증제도를 도입함.

신·구 조문 대비표

연행	개정(안)
<p>제28조 (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의 채택등) ① <u>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을 채택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종을 정할 수 있다.</u></p> <p>② <u>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을 채택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종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p> <p>제29조 (표준화의 추진) ① <u>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u></p> <p>② <u>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p> <p>〈신설〉</p>	<p>제28조 (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의 채택등) ① <u>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할 수 있다.</u></p> <p>② <u>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p> <p>제29조 (표준화의 추진) ① <u>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이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전기통신기자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기통신기자재가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30조 (한국통신기술협회) ① 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한국통신기술협회</u>(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p> <p>④ <u>체신부장관</u>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p> <p>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정보통신부령</u>으로 정한다.</p> <p>제30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u>(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정보통신부장관</u>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